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5 1 2 호

1975. 7. 29

시 보

차 례

◎규 칙

- 제 1489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근무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3
- 제 1490 호 : 서울특별시수원지사사무소직제중 개정규칙 4
- 제 1491 호 : 서울특별시여비지급규칙 4

◎고 시

- 제 115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7
- 제 116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 승인..... 7

◎공 고

- 제 168 호 : 석탄가공업자 및 연탄판매업자신고 8
- 제 169 호 : 세종로특정가구정비지구건축계획확정공고 9
- 제 171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공고 ... 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72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취소공고	9
제 238 호 (영등포구공고) : 공인개작공고	10
◎ 예 규	
제 300 호 : 서울특별시 팀동부여 자기술원운영규정	12
제 301 호 : 서울특별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내 민원업무취급요령중 개정규정	14
◎ 사 령	20

규 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7. 29

● 서울특별시규칙제 1489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 제 1 항에 단서불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지내의 출장을 하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별지 제 8 호의 2 서식)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별지제 8 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 별지제 8 호의 2 서식 >

근무지내 출장명령부

년월일	출장시간 : 부터 : 까지	직·성명 (인)	출장지 (거리)	출장목적	결 계		비 고

(16 절지)

서울특별시수원지사무소직제중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7. 29

◎ 서울특별시규칙제 1490 호

서울특별시수원지사무소
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원지사무소직제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조수원지사무소중 가목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여비지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7. 29

◎ 서울특별시규칙제 1491 호

서울특별시여비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
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
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현지교통비) 국내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의 현지 교통비는
1일 2회이상으로 3근무시간 이상
의 출장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제3조 및
제5조의 여비는 매출장시 지급하
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
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
별시 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영제 17 조, 조례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서식의 예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전도자금출납원(본청, 구 및 출장소와 과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각과 주무계장,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는 소장, 동은 사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명부를 확인한후 여비를 지급한다.

제 7 조 (정산)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대익월 5 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부 칙

③ 제 2 항의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이 규정은 197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 >

별 액 여 비 지 급 대 상

구 분	지 급 대 상
기술지도출장공무원	산림감시요원 (농림직), 측량요원 (토목 및 지적직) 토목공사기술지도요원 (토목직), 건축공사감독요원 (건축직), 농업지도요원 (농촌지도직) 기타 기술지도요원
상시 출장공무원	감사요원, 환경 순찰요원, 마약 단속요원, 계량검사요원, 무허가건물단속요원, 운수지도요원보도 (사진)요원, 정세요원, 청소지도요원, 수도사용료징수요원, 기타 당해 기관의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하는자

※ 임시적은 제외한다.

<원지서식>

여 비 청 구 및 영 수 증

일 금 원 정

위 금액을 1975 . . . 출장명령에 의한 여비로 정하

청구 및 영수 합니다.

과 계

지 성명 (인)

임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

귀하

출장부 대조필 (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15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도로)
결정 변경 및 지적 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변경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7. 22.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 (학교) 조서

학 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영훈유치원, 영훈초·중 고등학교	도봉구 미아동 471 - 2 호 외 27 필지	27,230㎡	

나. 시설일부 (도로) 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로	3		6 m	170 m	도봉구미아동 465 의 6	도봉구미아동 467 의 1125	일부폐지
변 경	"	"	"	"	70	"	482 의 31	
신 설	소로	3		6	86	도봉구미아동 467 의 1125	도봉구미아동 480 의 10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도봉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16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

1. 건설부고시 제 460 호 (73.11.22)

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 원) 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에

<p>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제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p>	<p>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7. 2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의주로 공원	서대문구 의주로 2가지역	17,340 ㎡	신 설

일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68 호

- 석탄가공업자 및 연탄판매업자신고-

석탄 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 2항의 규정 및 상공부공고 제 7907 호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 및 연탄판매업자의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5. 7. .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신고대상자

75.7.11. 현재 석탄가공업(연

탄 제조업) 및 관할 동사무소에 등록된 연탄판매업자

2. 신고처

가. 석탄가공업: 서울특별시(산업국 연료과)

나. 연탄판매업: 관할동사무소

3. 신고기간: 75. 8. 20 까지

4. 구비서류: 신고처에서 배부되는 소정서식

5. 기 타

본 요령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가공업(연탄제조업)의 허가 또는 연탄판매업의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1976. 3. 28 까지 법 제 5 조 및 제 6 조에 의한 허가 및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169 호

- 세종로 특정가구 정비지구
정비계획 확정공고

1. 당 시 종로구 세종로 특정가구
정비지구 (도림, 당주 신문로 1가
일부) 의 건축계획을 건축법 제 33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관계도서와 같이 확정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건
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 생략

1975. 7. 2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71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대체지정공고 -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생산지정업체중
회사명 및 대표자가 변경된 다음 업체
를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 공고한다.

1975. 7. 28.

서울특별시장

음

지 정 위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제 지	수출품	지정 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제 지	수출품
474	대원화성 주식회사	이춘남	성동구성수 동2가27	인조 피혁	474	대원화성 주식회사	강수향	성동구성수 동2가27	인조 피혁
1025	우성산업사	안종택	도봉구창동 117	쉐타	1025	성화교역 주식회사	김화섭	도봉구창동 117	쉐타

◎ 서울특별시공고제 172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취소공고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제
3조, 제 4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지정 및 지정위소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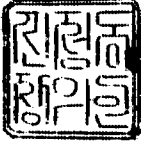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75수출목표액
482	주식회사삼정기업공사	이조이	성동구충정동 36-2	오락기계	167,370 \$
317	화천산업주식회사	박종화	동대문구승인동 204-11	비닐장갑류	288,000 \$
1032	한주물산주식회사	서기태	도봉구수유동 177-2	가 발	134,400 \$

2. 지정취소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취소사유
420	벌야상사	김지정	성동구성수동 1가 218	가 발	대기업전환
439	삼미기업주식회사	김문주	성동구성수 2가 231-2	T V 라디오	"
413	풍천화성주식회사	우기돈	성동구성수 1가 656	스트레지 나이론사	대기업전환
428	남영실업공사	남성희	성동구성수동 2가 284	진 구	대기업전환
440	삼화콘벤사공업사	오동선	성동구성수 1가 656-3	콘 벤사	"
401	해심섬유주식회사	양재홍	성동구신당동 213-49	예 타	"
812	제일복강주식회사	정대진	용산구갈월동 11-119	실사복	무단전출
101	평화당인쇄(주)	이일수	종로구전지동 60	인쇄물	대기업전환
107	상지물산주식회사	박 수	종로구명륜동 4가 188-7	가 발	무단전출
1404	합성편지사	장 효	서대문구용인동 334-12	쇄 타	대기업전환

<p>◎ 영등포구청공고제 238호</p> <p>- 공인개작공고 -</p> <p>영등포구 양명 2동의 4개동장직인 및 제인이 마멸되어 개작 사용하고 자 서울특별시 공인조별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1975. 7. 25</p> <p>영 등 포 구 청 장</p> <p>한 백</p> <p>개작공고 사용개시일</p> <p>1975. 8. 1. 09:00</p> <p>개작공고일영</p>
--	---

공 고 문 인 영

양평 제2동 직인	양평 제2동 계인
	
신길 제1동 직인	신길 제1동 계인
	
신도립동 직인	신도립동 계인
	
신정동 직인	신정동 계인
	
오류동 직인	오류동 계인
	

예 규

서울특별시 동부여자기술원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 서울특별시에규제 300 호

서울특별시립 동부 여자기술원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자기술원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호지도대상자) 보호지도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 (1) 보호대상자는 자 경찰서 및 관계기관에서 단속 되어온자.
- (2) 지도대상자는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입원을 자원하는 불우여성 및 보호상자중 자원자.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전조제 1호에 해당된자를 보호생이라 하고 전제 2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생이라 한다.

제 4 조 (상담및 검진) 보호지도 대상자 전원은 상담및 검진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호기간) 보호생의 보호지도 기간은 120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내 제반규율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그 정상에 따라 원내 보호기간에 가산하여 최고 60일 (도주 60일, 훔치는것 30일, 보호회수 허위진술자 30일, 폭행 50일, 중대한도의 60일, 직연 20일, 화각제복용 30일, 난동 60일, 불복종 30일, 복용입소 30일, 기타 원내제반규율을 위반한자 10 - 60일)을 연장 보호 할수 있다.

제 6 조 (보호연장) 보호지도 대상자중 법정전염병 제 3종 (성병) 보균자는 완치될때까지 연장보호한다.

제 7 조 (일반교육) 보호지도 대상자에게 입원기간중 일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보호생 생활지도, 정신및 정서지도, 보건위생, 작업지도를 실시하고 문맹자는 초등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 (2) 교육생 전항의 교육과정과 초등교육을 실시 한다.

제 8 조 (기술교육) (1) 진조의 일반 교육이외에 소절 및 희망에 따라 다음의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이용 나. 미용 다. 양재 라. 원물 마. 기타

(2) 기술교육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료식은 연 1회로 하되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3) 기술교육에 필요한 사회실습은 학과원생 10개월후 담당교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천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외출) (1) 보호생 : 직제준비후 이 사망 또는 위독할때 (관보) 5일 이내의 외출을 허락할 수 있다.

제 10 조 (면회) 보호생의 면회는 상담 및 검진을 위한 입원일로 부터 최소 3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공휴일은 가산치 않는다.

제 11 조 (퇴원)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퇴원하게 할 수 있다.

단,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 및 검진에 응하지 아니한자와 제 4 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단속 기관장의 오인 단속 증명을 제출할때

나. 의사의 진단결과 처녀로 판정 될때

다. 법률혼으로 확인될때

라. 임신 3개월 이상으로 인정 될때

(1) 제 3 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자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만기 퇴원전이라도 퇴원하게 할 수 있다.

가. 1회 입소자는 20일

나. 2회 입소자는 40일

다. 3회 입소자는 80일

라. 4회 입소자는 120일

(2) 진환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일호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직제준수, 친오빠, 친언니에게 인계할때 (단, 위친족이 없을 경우 직제비속)

나. 결혼을 하게 될때

다. 자립능력이 있다고 인정 될때

제 12 조 (심사위원회) ① 보호지도대상자의 보호기간 및 교육, 의학, 연회, 퇴소등 보호지도업무중 중요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일년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사무장
 - 간사 (위원) : 상담원 1인
 - 위원 : 사 감 1인
 - 위원 : 담 임 1인
 - 위원 : 기술교도원 1인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시행이전에 전 대방부녀 보호지도소와 동부부녀 보호지도소 및 동부여자기술원에서 보호된 죄수는 이 규정에서의 보호회수로 본다.

◎ 서울특별시에 규제 301 호 (75.7.26)

서울특별시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내 민원업무취급요령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내 민원업무취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 본문중 "구청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한다.

제 4 조 제 2 항의 구청장이 허가하는 사항중 제 3 호 "토지의 분할"을 삭제한다.

제 5 조 제 1 항중 "자력개발허가"를 다음에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삽입하고 "1만제곱미터를" 범상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력개발 허가면적은 1,65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로 동조 제 3 항 및 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전액부담으로 허가할 때에는 공사비의 1할을 보증금으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구좌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후 관리처분 계획서의 감보를 산정에 있어서 타와 차등을 두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신축허가는 개발촉진지구에 준하되 재개발계획에 저촉하지 아니하고,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하며 지목은

만드시 대지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65 제곱미터이상(기타지역 및 지구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풍치지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지의 최소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6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위치와 주변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상 최소건축면적이 상인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 5 조 7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재개발지구내 토지분할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거친 후 지적분할허가처리지침(건설부도시예규제 1 호 73.2.8)에 준하여 처리하되 대지면적은 165 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여건 또는 도시계획시설용지 확보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기준면적(도시계획법제 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 6 조중 제⑤⑥⑦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건축물의 신축 및 계속

가. 지적도 1부

나. 건축배치도 1부

다. 토지대장등본 1부

라.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기권리증등 필요한 제서류

⑥ 건축물의 증축

가. 지적도 1부

나. 토지대장등본 1부

다. 상층계획배치도 1부

⑦ 건물의 주인허가

가. 지적도 1부

나. 건물배치도 1부

다. 토지대장등본 1부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내민원업무취급요령

개 정 전 후 대 비 표

조 항	현 행	개 정 후
<p>제 4 조 취급업 무처리 결차</p>	<p>①항 생략 ② 구청장을 경유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허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허가 2. 건물의 추인허가 3. 토지의 분할</p>	<p>①항 생략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허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허가 2. 건물의 추인허가</p>
<p>제 5 조 취급업 무의처 리기준</p>	<p>① 주민부담에 의한 자력개발허가는 공사비의 전액을 주민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공사비의 반부담으로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시설및 택지공사는 시가 주관하여 시공하고 허가 최소면적은 1만㎡이상이어야 한다. ②항 생략 ③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개발계획저촉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목적</p>	<p>① 주민부담에 의한 자력개발허가 및 토지형 변경허가는 공사비의 전액을 주민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사비의 불부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시설및 택지공사는 시가 주관하여 시공하고 허가면적은 법상 최소면적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력개발허가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②항 생략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전액부담으로 허가할 때에는</p>

조항	원	계정
	<p>으로 하는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며, 사업실시계획 인가전에는 3,300평미만 사업실시계획 인가후에는 1만평미만의 면적에 한하여 허가시에는 공사비의 1할을 보증금으로 책임채출의 원금출납공무원 구좌에 예치하고 준공후 관리처분 계획서의 감보를 산정에 있어 타와 차등을 두어 예결을 부여할 수 있다.</p> <p>④ 건축물의 신축허가는 개발촉진지구에 준하되 지목이 대지이고 대지면적은 165평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면적도 66평이상이어야 한다.</p> <p>다만, 대지 위치와 주변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상 최소건축면적이상인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p>공사비의 1할을 보증금으로 책임 채출의 원금출납원 구좌에 예치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후 관리처분계획서의 감보를 산정함에 있어서 타와 차등을 두어 예결을 부여할 수 있다.</p> <p>④ 건축물의 신축허가는 개발촉진 지구에 준하되 체계발계획에 저촉하지 아니하고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지목은 반드시 대지이어야 한다.</p> <p>이 경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65평이상(기타 지역 및 지구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 제39조 2 및 서울특별시 동지지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지의 최소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66평이상이어야 한다.</p> <p>다만, 대지 위치와 주변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상 최소건축면적이상인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조 항	현 행	개 정 후
	<p>⑦ 토지분할허가는 지적분할 허 가 처리지침 (건설부 도시에규 제1호 73,2.8)에 준하여 허가하되 대지면적은 16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형 여건 또는 도시계 획 시설용지 확보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건축면적 이상으 로 분할 허가할 수 있다.</p>	<p>⑦ 재개발지구내 토지분할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를 거친후 지적분할 허가처리 지침 (건설부 도시에규 제1호 73.2.8)에 준하여 처리하되 대지면적은 165㎡이상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지형 여건 또는 도시계 획 시설용지 확보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기준면적 (도 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 행령 제5조)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p>
<p>제 6조 구비서 류</p>	<p>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가. 지적도 1부 	<p>과 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가. 지적도 1부

포 함	현 행	계 정 후
	<p>나. 현황사진 1매</p> <p>다. 건축계획도 (배치도 및 규모) 1부</p> <p>라. 토지대장등본 1부</p> <p>마. 등기부등본 1부</p> <p>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제서류</p> <p>6. 건축물의 증축</p> <p>가. 지적도 1부</p> <p>나. 현황사진 1매</p> <p>다. 토지대장등본 1부</p> <p>라. 토지등기부등본 1부</p> <p>마. 증축계획도 1부</p> <p>7. 건물의 주인허가</p> <p>가. 지적도 1부</p> <p>나. 건축대지증명 1부</p> <p>다. 현황사진 1부</p> <p>라. 건물배치도 1부</p> <p>마. 주민등록초본 1부</p> <p>바. 매지등기부등본 1부</p> <p>사. 토지대장등본 1부</p>	<p>나. 건물배치도 1부</p> <p>다. 토지대장등본 1부</p> <p>라.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토지대장등본,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등 필요한 제서류</p> <p>6. 건축물의 증축</p> <p>가. 지적도 1부</p> <p>나. 토지대장등본 1부</p> <p>다. 증축계획배치도 1부</p> <p>7. 건물의 주인허가</p> <p>가. 지적도 1부</p> <p>나. 건물배치도 1부</p> <p>다. 토지대장등본 1부</p>

사 명

◎ 1975.7.20

시 민 과 지방통신원보시보 김 욱 량
지방통신원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민과 근무를 명함.

◎ 1975.7.23

도 봉 구 지방행정서기보 노 진 일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도봉구근무를 명함.

소 방 본 부 서 기 관 한 갑 석
부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소방본부장에 보함.
(1975. 7.23 자)

◎ 1975.7.28

서대문보건소 지방보건기과 윤 효 영
동대문구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영등포구 청소(지방행정주사) 최 장 훈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제 5호에
외거 그 직을 면함.
(1975.7. 8)

영등포구 청소(지방행정주사) 오진완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제 5호에
외거 그 직을 면함.

(1975. 7.8 자)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과 한충현
관악구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관악구보건소 지방보건기과 김형동
의약과의무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과 마도진
지방공무원법 제 61조의 1의
규정에 외거 휴직을 명함.

◎ 1975.7.29

공 업 과 지방행정사 변영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북보건소 지방행정사무관 이복용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항에
외거 휴직 (75.7.24-76.1.23)
을 명함.

귀생연구소 지방보건(직위해제중) 연구관 김효상
직위해제사유 변경으로 인하여
그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제65조
의 2 제 1항 1호로 변경함.

◎ 1975. 7.30

성 동 구 지방행정주사 이 군 우
청소1과장이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p>◎ 1975. 8. 1</p> <p>지하철본부 (건설과공사계장) 지방토목과 이 창 성</p> <p>구획정리 1과 환지 2계장에 포함.</p> <p>구획정리 1과 (환지 2계장) 지방토목과 신 영 우</p> <p>시대문구근무를 명함.</p> <p>수 산 청 토복기과 최 경 준</p> <p>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p> <p>지방토목기과에 임함.</p> <p>4호봉을 급함.</p> <p>지하철본부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사 김 소 구</p> <p>종로구근무를 명함.</p> <p>시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 차 제 문</p> <p>중구근무를 명함.</p> <p>성 북 구 행정주사 황 규 진</p> <p>지방행정주사에 임함.</p> <p>17호봉을 급함.</p> <p>성동구근무를 명함.</p> <p>건설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정 태 우</p> <p>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주서기 이 오 석</p> <p>종로구근무를 명함.</p> <p>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신 상 옥</p> <p>시민과근무를 명함.</p>			<p>마 포 구 지방행정주서 이 병 태</p> <p>동대문구근무를 명함.</p> <p>영동출장소 지방행정주사 심 상 용</p> <p>보건행정과근무를 명함.</p> <p>마 포 구 지방행정주사 유 제 영</p> <p>중구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엄 무 실</p> <p>관악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성 동 구 지방행정주사 이 사 영</p> <p>천호출장소근무를 명함.</p> <p>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 이 원 점</p> <p>동부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p> <p>영 등 포 구 지방행정주사 김 명 철</p> <p>성북구근무를 명함.</p> <p>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 이 영 구</p> <p>동대문구근무를 명함.</p> <p>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 김 만 식</p> <p>서대문구근무를 명함.</p> <p>관악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김 영 호</p> <p>관악구근무를 명함.</p> <p>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 이 정 복</p> <p>중부병원근무를 명함.</p> <p>동부건설사업소 지방행정주사 하 양 원</p> <p>종로구근무를 명함.</p>		
---	--	--	---	--	--

남부건설사업소	지방행정사	이창우	자동화정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경욱
마포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중부병원	지방행정사	조광식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김장수
종로구근무를 명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남부병원	지방행정사	홍광식	은명출장소	지방행정서기	유재원
남부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사	김창열	관악구	지방행정서기	이은규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사	이상길	은명출장소	지방행정서기	권영복
시설관리과근무를 명함.			중구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사	김경욱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박상호
종로구근무를 명함.			종로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사	신태식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김광조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종로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사	허병수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전영규
성북구근무를 명함.			중구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	최수용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박인성
영등출장소근무를 명함.			중구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행정서기	신경철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정재명
중구근무를 명함.			중구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서기	이경충	영등포병원	지방행정서기	전재명
성동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신용동	도봉구	지방행정서기	이만식
중구근무를 명함.			용산구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영등출장소근무를 명함.	이 의 환	8호봉을 급함. 세무조사과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영등출장소근무를 명함.	한 정 의	성동구 지방행정 주사보	이규호
영등포구 지방행정 성동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	서재창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관악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	전광옥	성동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기	김지현
성화구 지방행정 도봉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	조수찬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성동구 지방행정 영등출장소근무를 명함.	조한수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양정과 행정서기	정한옥
관악구 지방행정 영등보병원근무를 명함.	이열원	행정주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관악구 지방행정 도시가스사업소근무를 명함.	김철락	양정과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보	함인수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	김호규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종로구근무를 명함. 순찰담당관 지방행정 주사보	박성진	성북구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보	박상국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순찰담당관실근무를 명함. 세무조사과 지방행정 주사보	길귀	지하철본부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사	한정오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건설행정과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주사보	정원호	시설관리과 지방행정 서기보	조태양
건설행정과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주남	시설관리과 지방행정 서기보	박호길
건설행정과근무를 명함.		관악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차덕호	시설관리과 지방행정 서기보	장세주
시설관리과근무를 명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서기	배정진	중 구 지방행정 서기	유정걸
시설관리과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	김화봉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주사	김한영
시설관리과근무를 명함.		시정개발담당관근무를 명함.	
종로구 행정주사	장도진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진태홍
마포구근무를 명함.		도봉구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주사	강영걸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유권
관악구근무를 명함.		인사과근무를 명함.	
		(75.8.1 - 75.10.31)	
서울특별시청			